

1. 개정이유

2026. 10. 2.부터 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) 및 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, 「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」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수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”로 함 (안 제1조, 안 제17조).
- 나. “조사”를 각각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함 (안 제2조, 안 제13조, 안 제18조, 안 제19조, 안 제20조).
- 다. “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”을 삭제함 (안 제4조).
- 라. “검찰총장”을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함 (안 제12조제3항).
- 마. “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”를 “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”으로 함 (안 제4장 제목).
- 바. “진술조서”를 “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”로 함 (안 제1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소청법, 형사소송법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수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본문 중 “조사”를 각각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제4조제3호 본문 중 “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”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3항 본문 중 “검찰총장”을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조사”를 각각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제4장 제목 “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”를 “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수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본문 중 “조사”를 각각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“조사”를 각각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하고, 제1항 본문 중 “진술조서”를 “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”으로 하며, 제2항 본문 중 “조사자 및 피조사자”를 “해당 검사 또는

사법경찰관, 피해자”로 한다.

제20조 제목 “(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)”을 “(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)”으로 하고,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“조사”를 각각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하며, 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 제목 “(조사 후 의견 제출)”을 “(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)”로 하고, 제1항 본문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”으로 하며, 제3항 본문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, 제35조의3 및 제36조(「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, 양성, 배치 및 <u>수사절차</u>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</u> 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칙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, 제35조의2,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(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	제2조(적용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<u>조사</u> ·심리	1. ----- ----- ----- <u>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</u> ----- --

2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<u>조사</u> 나 심리·재판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</u> ----- ---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<u>조사</u> ·검증 또는 증인 신문	3. ----- ----- ----- <u>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</u> ----- -----
4. 「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<u>조사</u> ·심리	4. ----- ----- ----- <u>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</u> -----
5. (생략) 제4조(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)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.	5. (현행과 같음) 제4조(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)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아동·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<u>전문수사자문위원</u> 또는 <u>전문심리자문위원</u> 으로 활동한 경	3. ----- ----- <u>전문심리자문위원</u> ----- -----

힘이 있는 사람

4. (생 략)

제12조(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)

①·② (생 략)

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, 검찰총장,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13조(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)

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
참여 등

제17조(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)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“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

4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)

① -----

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-----
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장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

제17조(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) -----
-----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 -----

약한 피해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8조(의사소통 중개·보조의 범위)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1.·2. (생략)

3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,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,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업무

4. 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업무

5.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의사소통 중개·보조의 범위) ①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-----

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의-----

4. -----
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-----

5. 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-----
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,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(CD, DVD 등을 말한다)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)

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

제19조(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) ① -----

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-----
진술조서 또는 면담 결과서 등을 -----
 - 진술조서 또는 면담 결과서 등에 -----

 ---.

② -----
 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-----

 -----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, 피해자의-----

 -----.

제20조(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

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) ① ---
 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-----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-----

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21조(조사 후 의견 제출)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,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-----.

② -----
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
또는 조사 -----

-----.

③ -----

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) ① -----

--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사실관계
확인, 면담 또는 조사 -----
-----.